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746
----------	------

2021. 9. 8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오중석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03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09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종전에는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포괄적 위임하고 있었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개정('21.7.9. 시행)에 따라 모집공고를 통해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작성·지정을 의무화하고 그 외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여 이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해체심의대상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으로 확대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해체를 해체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7조제1항제2호마목 개정)

3. 대안의 주요내용

-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9조제4항 및 제5항)
- 해체심의 대상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으로 확대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해체를 해체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7조제1항제2호마목, 제50조제2항제5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다만, 제1항제1호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의 시 기존 건축물의 해체에 관한 심의를 포함하여 받은 경우는 제외)

제19조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이하 “업무대행 건축사”라 한다)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1. 업무대행 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무대행 건축사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2. 업무대행 건축사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 및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세움터, 관련협회 등 해당 관할 업무대행 건축사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모집대상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격이 있는 자 중 시에 소재지를 둔 건축사로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 선발기준, 등록신청에 관한 기준 및 선발인원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시

및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항 외의 명부 작성·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50조제2항제5호 중 “철거 및 철거보상비”를 “해체 및 해체보상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대안)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생 략)</p> <p>2. 구 위원회 심의사항 가 ~ 라. (생 략)</p> <p>마. <u>지상 5층 또는 높이 13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2층 또는 깊이 5미터 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다만, 제1항제1호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의 시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심의를 포함하여 받은 경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은 제외)</u></p> <p>바. ~ 사. (생 략)</p> <p>② ~ ⑤ (생 략)</p> <p>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 ③ (생 략)</p> <p>④ <u>시장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제2</u></p>	<p>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다만, 제1항제1호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의 시 기존 건축물의 해체에 관한 심의를 포함하여 받은 경우는 제외)</p> <p>바. ~ 사.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u></p>

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한다.

1. <신 설>

2. <신 설>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 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활용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 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2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이하 “업무대행 건축사”라 한다)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1. 업무대행 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무대행 건축사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2. 업무대행 건축사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 및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세움터, 관련협회 등 해당 관할 업무대행 건축사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모집대상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격이 있는 자 중 시에 소재지를 둔 건축사로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 선발기준, 등록신청에 관한 기준 및 선발인원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시 및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항 외의 명부 작성·관리 및 지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제5항에 따른 명부 활용 및 그 밖에 업무 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생략)

1. ~ 4. (생략)

5.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의 철거 및 철거보상비

6. ~ 9. (생략)

③ ~ ④ (생략)

정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5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4. (생략)

5. -----
----- 해체 및 해체보상비

6. ~ 9.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